

보도시점

2025. 1. 14.(화) 조간
2025. 1. 13.(월) 12:00

배포

2025. 1. 13.(월)

청소년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증으로 편리하게 지하철 이용하세요

- 14~18세 장애인의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포함 -
- 광역전철 '동해선'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결제 가능 -
- 올해 말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범 발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여,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즉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이 확대된 바 있다. 종전에는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일반

요금이 결제되어 장애인이 불편을 겪었으나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동해선 구간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12월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내년 초에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거에 장애인등록증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되는 정도로 사용하는 데에 그쳤으나, 지금은 신용카드, 교통카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되어 사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용어 설명
2. 질의 응답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방석배 (044-202-3280)
		담당자	사무관	두유림 (044-202-3299)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상의 명칭은 '장애인 등록증'이나, 실제 장애인등록증에는 '복지카드'라고 표기되므로 흔히 '장애인 복지카드'라고 부름
- 따라서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 복지카드'는 같은 의미임

□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등록증에는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금융카드 기능을 부가할 수 있으며, 금융기능이 없는 경우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금융카드 기능이 있는 경우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이라고 함
-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는 주민번호 13자리와 주소가 표기되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고, 이에 반해 금융카드형에는 주민번호 뒷번호 및 주소가 표기되지 않으므로 소지자가 등록된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함



□ 신용카드형 /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다시 신용카드 기능이 부가된 '신용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직불카드 기능이 부가된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됨

- 신용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신용심사 결과 적격 인정되어야 하고 ▲19세 이상이어야 함
- 이에 비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비교적 낮은 신용등급의 장애인에게도 발급 가능하고, ▲14세부터 발급 가능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 지하철 무임 및 버스 유임으로 결제되는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하는 장애인등록증을 말하며,
- 모든 금융카드형(신용/직불 포함)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됨

Q1. 지금까지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없었나요?

- 네. 지금까지는 성인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만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14세~18세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도 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되어,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 이용 시에 무임 결제(요금 면제), 버스 이용시 청소년 요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Q2. 모든 미성년 장애인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14세 이상인 장애인만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도 기본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발급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신용카드형의 경우 19세 이상, 직불카드형의 경우 14세 이상에 대해 발급 가능합니다.

Q3. 현재 청소년 장애인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재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직불카드 유효기간*이 '29년 9월 이전인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교통카드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직불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월부터 5년이므로,
발급월 기준으로는 '24.9월 이전 재발급 필요, '24.10월 이후 재발급 불필요

Q4.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단순 무임교통카드와 중복하여 발급이 가능한가요?

○ 지하철 무임결제 교통카드는 중복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단순 무임 교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단순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시에 기존 등록증에 충전된 금액(티머니)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티머니충전금 환불은 가까운 편의점 및 지하철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므로 환불이 완료되기
까지 기존 카드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 기존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관련 상세 안내 및 문의는 티머니 홈
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44-0088)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